

##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접수기간	시험(심사) 장소	시행 지역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제 서류 심사	03. 16.(월) 09:00 ~ 03. 27.(금) 18:00 (3.18. 공단창립기념 휴무일, 주말, 공휴일 제외)	전국공단 지부지사 (p.9~10참고, 울산본부 제외)	-	-	-	- 등기/방문 제출가능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서류승인 후 원서접수
제1차 시험	04. 13.(월) 09:00 ~ 04. 17.(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05. 30.(토)	07. 01.(수)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 빈자리 접수 없음
제2차 시험	07. 27.(월) 09:00 ~ 07. 31.(금) 18:00		서울, 부산	10. 03.(토)	12. 16.(수)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 가능(면제자 포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 불가(단, 원서접수 기간 중 다른 분야 및 언어 변경은 본인이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로만 가능)

※ 시험면제 대상자(1차/1차 및 2차 일부/전부면제)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전부면제자의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필수(4.13~17), 2차시험 원서접수 불필요, 합격자 발표(12.16)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제1차 시험 면제유형 중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의 경우는 '서류제출'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필요

\* 이미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동일한 자격에 원서접수한 경우에는 시험 무효처리됨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 (제2차 접수기간)

- 2026. 07. 27.(월) 09:00 ~ 07. 31.(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 3.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차수	교시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항 수	시험시간			
제1차	1	공통	①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선택형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1	공통	①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논술형 및 약술형 혼합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분 (09:30~11:10)			
		공통	③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2	선택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반</th> <th>해사</th> <th>외국어번역</th> </tr> </thead> <tbody> <tr> <td>④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td> <td>④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td> <td>④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td> </tr> </tbody> </table>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④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④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④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④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포함)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6.7.31.)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21.1.1.)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단 유효기간이 있는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인정. 유효기간이 있는 어학성적의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 불가

### 4. 합격자 결정 방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최소선발인원이 적용되는 일반·해사행정사(공무원 경력에 의해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응시자 포함) 2차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공무원 경력 일부과목 면제 합격자 수에 상관없이 일반응시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함

##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

####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제2차 시험 시험시행일(2026. 10. 03.)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제5항] \*면제서류 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제1항 4호] \*자격증 원본 제출 필수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분	해당 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 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총 경력 5년 이상 (19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해사행정사는 해사업무 5년	일반직(기능직, 교육공무원, 군무원 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전부 면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없음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교육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일반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 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 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 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 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 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 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 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 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 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자		

○ 해사 행정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해사 행정사 경력 인정 상세기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 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 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 에 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 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 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 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 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 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 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 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 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 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 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 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 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 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 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자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011. 03. 0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1995. 07. 20. ~ 1999. 12. 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 03. 0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예: 경호공무원 경력산정

근무기간	인정경력	적용기준	비고
1993. 07. 20. ~ 2000. 07. 19. (7년)	1995. 07. 20. ~ 2000. 07. 19. (5년)	2011. 03. 08. 이전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1993. 07. 20. ~ 2005. 07. 19. (12년)	1995. 07. 20. ~ 2005. 07. 19. (10년)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2000. 01. 03. ~ 2010. 01. 02. (10년)	2000. 01. 03. ~ 2010. 01. 02. (10년)	2011. 03. 08. 이후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만 해당 (사립학교는 제외)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 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개정규정 시행 이전 처분이력은 해당없음)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등)	
법 제9조제3항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 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 제13조제4항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7. 시험면제 서류 제출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 (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
  - ※ 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1차 및 2차 일부/전부면제)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 전부면제자-1차시험 원서접수 필수(4.13~17), 2차시험 원서접수 불필요, 합격자 발표(12.16)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 제1차시험 면제 유형중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의 경우 서류제출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필요
  - \* 이미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동일한 자격에 원서접수한 경우에는 시험 무효처리됨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수험자의 인적사항, 경력기간, 휴직 및 징계사항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표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인사표 등) 전체본 필수 제출(요약본 불가) \*아래 제출서류 확인
  -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 경우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은 경력 산정 시 제외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팩스, 사본 등 인정 불가)
- 제출 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자료실) 및 시행계획 공고문 별지 참조

- 제출대상: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시험 전부면제자
- 제출기간: 03. 16.(월) 09:00 ~ 03. 27.(금) 18:00(3.18 공단창립기념 휴무일 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자는 방문 제출만 가능(행정사 자격증 원본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2026. 04. 17.]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비고
공통(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ul>	별지1 별지2	
경력, 학력에 의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②,③ 중 하나</li> <li>① 경력증명서(각 기관 발행) + 인사기록카드(인사기록표, 인사자력표 등) 전체본 *요약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기록카드는 심사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기타 용도로 활용 하지 않음</li> </ul> </li> <li>② 경력증명서(각 기관 발행) + 경력증명서 발급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와 함께 휴직 및 징계이력 유무 시기 기재 (예: 재직기간 중 휴직 및 징계사항 해당없음) 후 투명 테이핑 처리</li> <li>③ 경력증명서(2026년 개정 공단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번역행정사 추가 제출) 학위증명서</li> <li>■ (해사행정사) 해사행정사 경력인정 상세기준 참고(Q-Net 행정사)</li> </ul> </li> </ul>	별지3-1	경력증명서상 휴직 및 징계이력 등 서류심사에 필요한 부분이 “공란”일 경우 확인 어려움 ①인사기록카드 또는 ②발급담당자 시기 기재 또는 ③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 자격증 원본</li> </ul>		방문 제출만 가능
단체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li> </ul>	별지4	2인 이상

-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경력증명서 여부, 외국어번역사무 종사여부, 경력기간 등 확인
-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또는 부대 내 인사담당자 통한 발급), **퇴역군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경력증명서 및 인사자격표 전체본 신청(군번 및 성명 기재하여 신청, “징계 및 휴직여부 기재 요청” 필수)**
  - ※ 각 군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서류 신청 권장**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 **단순 서명으로 확인된 서류는 인정불가(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

가. 서류 제출기관

○ 전국 32개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3
서울서부지사	필기시험부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03302	02-2024-1723
서울남부지사	필기시험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7225	02-6907-7161
서울강남지사	자격시험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T412타워, 15층	06193	02-2161-9174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24408	033-248-8511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부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25440	033-650-5751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부산남부지사	필기시험부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48518	051-620-1952
경남지사	필기시험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51519	055-212-7261
울산지사	필기시험부	울산 중구 중가로 347	44538	052-220-3211, 3223
경남서부지사	자격시험부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52733	055-791-0736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84
경북지사	자격시험부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36616	054-840-3037
경북동부지사	자격시험부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9	37580	054-230-3258
경북서부지사	자격시험부	경상북도 구미시 산화대로 253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39371	054-713-3027
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16626	031-249-1265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71
경기북부지사	필기시험부	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11801	031-850-9127
경기동부지사	필기시험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4	13320	031-750-6222
경기남부지사	자격시험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더스페이스 I, 2층	17561	031-615-9010
경기서부지사	자격시험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양지빌딩 2층	14488	032-719-0844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99
전북지사	자격시험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54852	063-210-9227
전남지사	자격시험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57948	061-720-8534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58604	061-288-3325
전북서부지사	자격시험부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 2층	54098	063-731-5514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064-729-0715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35000	042-580-9137
충북지사	자격시험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394번길 81	28456	043-279-9041
충남지사	필기시험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27	30181	041-620-7690
세종지사	자격시험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 5층	30128	044-410-8026
충북북부지사	자격시험부	충북 충주시 호암수정2로 14, 3층	27502	043-720-4321

○ 전국 32개 소속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원지사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김해시·밀양시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서부지사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북서부지사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경인지역본부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경기남부지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경기서부지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지사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지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제주지사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전북서부지사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지사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남지사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북북부지사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나. 시험 면제서류 제출 세부 안내

###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진급사항, 경력기간, 신분변동, 특히 휴직·징계여부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경력 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공단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2026년 개정된 양식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별지3-1] 및 [별지3-2])
- 면제서류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전체본(인사기록표, 인사자력표 등)을 제출하여 직군(직렬), 직급, 진급사항, 경력기간, 신분변동, 휴직·징계여부 등 서류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받는 것이 원칙
  - ※ 공무원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시 휴직 및 징계이력 등이 있음에도 “공란”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음
  - 경력증명서상 휴직 및 징계 등 서류심사에 필요한 부분이 “공란”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 전체본(인사기록표, 인사자력표 등)을 통해 확인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와 함께 휴직 및 징계이력 유무 시기 기재(예: 재직기간 중 휴직 및 징계사항 해당 없음)하고 투명 테이핑 처리하여도 인정 가능
- 위 서류 제출도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2026)의 경력증명서로 제출 가능[별지3-1]
  - ※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또는 부대 내 발급) 가능하나 퇴역군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경력증명서 및 인사자력표 신청(군번 및 성명 기재하여 신청, 징계 및 휴직여부 기재 요청)
  - ※ 각 군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서류 신청 권장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상세 기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해사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인정기준’ 참조)
  - ※ 면제서류는 관련 법령 및 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 심사”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 행정사 자격 취득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 자격증 원본(서류 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li> <li>■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li> </ul>	
<b>■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b>	
<b>■ 외국어번역행정사 (2011.3.8.법을 공포 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1차 면제만 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①,②,③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인사기록카드(인사기록표, 인사자력표 등) <b>전체본 *요약본 불가, 인사기록카드는 심사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기타 용도로 활용 하지 않음</b></li> <li>②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 발급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와 함께 휴직 및 징계이력 유무 시기 기재(예: 재직기간 중 휴직 및 징계사항 해당없음) 하고 투명 테이핑 처리</li> <li>③경력증명서(2026공단 양식 [별지3-1] 및 [별지3-2])</li> </ul> </li> <li>■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li> <li>■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li> <li>■ (해사행정사) 해사행정사 경력인정 상세기준 참고(Q-Net 행정사)</li> </ul>	
<b>■ 외국어번역행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b>고등교육법상 대학[국내 4년제 상당]</b>의 해당 외국어 학위증명서여야 함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 의거, 영어교육전공(×), 영어영문전공(○)]</li> </ul> </li> <li>■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li> <li>■ (공무원)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li> <li>■ (공무원 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li> </ul> </li> <li>■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li> <li>-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b>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b></li> <li>-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b>고등교육법상 대학[국내 4년제 상당]</b>의 해당 외국어 학위증명서여야 함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 의거, 영어교육전공(×), 영어영문전공(○)]</li> <li>-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 및 그 번역문</li> </ul>	
<b>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b>	<b>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li> <li>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li> <li>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li> <li>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b>공증을 받지 않은 단순 서명으로 제출된 서류는 인정 불가</b>)</li> <li>*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li> </ul>	
<b>&lt;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및 단체&gt;(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li> <li>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아래 해당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i> <li>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b>국립 또는 공립</b>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li> <li>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 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li> <li>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li> </ol>	

##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대상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 험 명	유효기간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TOEFL	2년	·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TOEIC	2년	·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TEPS	2년	·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G-TELP	2년	·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FLEX	2년	·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IELTS	2년	·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신HSK	2년	·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DELE	없음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DELFDALF	없음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괴테어학	없음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TORFL	없음	·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외국어시험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6. 7. 31.)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21. 1. 1.)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단,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27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 불가(시행령, 부칙(제34364호 2024.3.26.))

(ex.유효기간이 2년인 성적의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유효기간 만료시 진위여부 확인 불가

※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기재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하지만, 기재출 하여 승인된 경우라도 위 기간 미충족시 인정 불가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인정방법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본을 반드시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 그 외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TOEIC)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에 제출처(서울·부산지역본부)로 제출(일본 시행 토익은 상기 기재된 바에 따름)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 **단순 서명으로 확인된 서류는 인정불가(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
- 외국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단, 인터넷 출력 원본도 가능)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공인어학성적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진위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착오 입력 등)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Q-Net 행정사 홈 페이지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진위여부 미확인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성적표 원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처리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 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원서접수 기간 중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7. 27.(월) 09:00 ~ 7. 31.(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 제출기간 이전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성적은 사전 제출·등록 가능(사전 등록·제출방법 안내 참고)

※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 출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개 시행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4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다. 제출서류

① 외국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외국어시험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④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③성적확인동의서[별지6] 제출

※ 「외국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별지5] 및 「성적확인동의서」[별지6]는 Q-Net 행정사 홈페이지 - 자료실 참고

라. 제출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국내시행 토익, 텡스, 지텔프 시험에 한함)

※ **국내시행 토익, 텡스, 지텔프 시험에 한하여 온라인**(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하단의 제출하기)으로 **상시 제출 가능[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

※ 제출한 외국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외국어시험성적표가 2026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별도로 외국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른 국가전문자격(공단 시행)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6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불필요(국가기술자격(검정형)에 제출된 영어성적은 불인정)

**<외국어시험성적표 사전등록·제출안내>**

가. 외국어시험성적 인정신청 방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어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인정 받아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외국어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나. 외국어시험성적 사전 제출·등록방법

○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어학성적(**TOEIC(국내), G-TELP 및 TEPS에 한함**)

- 반드시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 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어학성적

- 제2차 시험 시행지사(서울, 부산)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구분	내용
제출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li> <li>※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의뢰 및 조회결과 회신문 수령 가능</li> </ul>
제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예)2026. 2. 1. ~ 2. 10.</li> <li>※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된 성적표 원본을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 의뢰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입력(등록) 예정</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역행정사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서식1) 1부</li> <li>• 외국어시험성적표 원본 1부</li> <li>※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해당국가 대사관 공증(아포스티유 증명서 대체가능) 후 한국어 번역 공증된 서류만 인정</li> <li>• 성적확인 동의서 1부(일본에서 취득한 TOEIC시험만 해당)</li> </ul>

#### 다.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개 시행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4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성적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9. 응시원서 접수

### 가. 원서접수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 시험 면제자(1차면제/1차 및 2차 일부면제/전부면제)는 면제서류 제출기간에 제출된 서류 심사·승인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4.13~17)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필수
- \* 전부면제자의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필수(4.13~17), 2차시험 원서접수 불필요, 합격자 발표(12.16)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 제1차시험 면제유형 중 전년도 1차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의 경우 서류제출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필요
- \* 이미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동일한 자격에 원서접수한 경우에는 시험 무효처리됨
-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1차 및 2차 일부면제/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 ※ 1차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

### 나.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04. 13.(월) 09:00 ~ 04. 17.(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 07. 27.(월) 09:00 ~ 07. 31.(금) 18:00, 5일간
-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가능하나, 원서접수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접수 가능(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다.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원서접수 참고사항(일반 및 면제 수험자 공통)**

-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사이즈: 300×400이상, dpi: 300권장, 파일형식: JPG, 용량: 200KB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 공단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 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라.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7개 지역)
- 제2차 시험: 서울, 부산(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마. 수수료 납부(행정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

- 응시 수수료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일반응시자	25,000원	40,000원
서류제출에 따른 1차/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10,000원	40,000원
1, 2차 전부면제자	10,000원	해당 없음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킥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다른 결제 수단만 가능

**바. 수수료 환불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구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li> <li>•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li> <li>•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li> </ul>
5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b></li> </ul>
환불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li> <li>• 시험 결사자</li> </ul>
사후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b>납입한 수수료의 전부</b></li> <li>•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b>납입한 수수료의 전부</b>(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li> <li>•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b>납입한 수수료의 전부</b>(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li> <li>•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b>납입한 수수료의 전부</b>(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li> <li>• 천재지변(폭우, 폭설, 대규모 산불 등)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안전문자 송신 내역, 주민등록등본(수험자 거주지 증빙), 그 외 증빙(필요시, 관련 기사 등) 첨부)</li> <li>• 천재지변 사전/사후 대응(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 군, 경찰, 소방 및 공무원 등)으로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근무명령 공문, 재직증명서 첨부)</li> </ul> <p>☞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p>
<p>*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li> <li>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li> </ol>	

**사.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아.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행정사 종류별 원서접수를 하므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 자. 시행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구분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4	1·2차 시행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22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84	1차만 시행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71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99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042-580-9137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064-729-0715	

※ 제2차 시험은 서울·부산지역본부만 시행

## 10. 응시편의 제공

### 가.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Q-Net 행정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국가전문자격 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고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포함)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제출
- ※ 해당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함

## 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필기 및 필답형)				
편의제공 대상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제출 서류
시각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①,②, 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 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지체장애	(1)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2)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①,②, 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지체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①,②, 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①,②, ③호 중 하나
지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 ②+④, ③+④

편의제공 대상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제출서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호 중 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 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횟수 및 시간) 없음	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두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시간 산정 방법 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시각장애 경증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 필기(답) 시험 적용 시  
 ⇒ 시각장애 경증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5}=90분]  
 + 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에 부여한 시간[(60분\*0.5)=30분] = 120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다만, 지체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와 상이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진단서 유효기간(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⑤ 임신부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26. 05. 30.(토) 14:00 ~ 06. 05.(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26. 07. 01.(수) 09:00

○ 제2차 시험(전부면제자 포함): 2026. 12. 16.(수) 09:00

○ 발표 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 공개

○ 발표 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http://www.Q-Net.or.kr/site/haengjung)): 60일간

나.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정부24([www.gov.kr](http://www.gov.kr))에서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신청 방법

- 준비 :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본인 공동·금융 인증서, 증명사진 jpg파일

- 신청 메뉴: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신규 발급도 가능)

※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 1588-2188

○ 시·군·구청 방문신청 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 신분증, 증명사진, 신청서 작성(시·군·구청 비치)
-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신분증·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담당자가 사진 등록 후 출력하여 발급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

〈 준비사항 상세 안내 〉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 ※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증명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 13. 수험자 유의사항

###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매 교시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 범위(2026.3.14.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추가 인정)

- (모바일 신분증) ①모바일 주민등록증, ②모바일 운전면허증, ③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①,②,③ 인정발급처 :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윌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④모바일 장애인등록증 ⑤모바일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해당 앱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만 설치 가능))

-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①(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앱·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우리WON뱅킹 원더윌렛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②(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앱 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①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② 정부24·PASS·네이버·카카오·삼성윌렛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③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

- 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앱에 발급된 것),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 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퇴실 가능 시점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 제1차 시험 1교시 1/2경과 후 중도퇴실 가능, 제2차 시험 2교시 1/2 경과 후에만 중도퇴실 가능하며, 중도 퇴실 가능 시점 이전에는 화장실 출입 등 퇴실 불가
  -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0점)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 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0점)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영어시험 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성적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 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16.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공고문 등)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5지 선택형)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 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연습지 포함)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2026)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목적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쿠키 ID</li> <li>학력사항, 경력사항(징계 및 휴직사항 포함), 자격취득사항</li> <li>본인이 응시·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li> </ul>	행정사 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행정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 또는 면제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	제공 목적	보유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 국민연 금공단, 국민건강보 험공단, 근로복지공 단, 한국TOEIC위원 회 등 행정사 자격 시험 시행근거 법 률에서 정한 공인 어학시험의 실시기 관 및 응시·면제 자격 심사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 메일주소,</li> <li>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 사항</li> <li>본인이 응시·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li> </ul>	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면제자 격 서류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li> <li>4대 보험 관리 기관 행정사 자                      격시험 시행근거 법률에서                      의정한 공인어학시험 실시기                      관 각 기관이 정한 문서 보                      존기간 동안</li> </ul>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 또는 면제, 결격사유 조회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3.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	제공 목적	보유기간
행정안전부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 경찰청, 인사혁신처) 목적 달성 후 폐기</li> <li>(행정안전부) 행정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3호, 제4호, 제5호 해당 여부 확인</li> </ul>	
	인사혁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6호 해당 여부 확인</li> </ul>	
법원, 경찰청,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결격사유 해당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신</li> </ul>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4.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요구대상기관	요구 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제공 여부	요구근거	보유기간
인사혁신처	▪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6호 해당 여부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	X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목적 달성 후 폐기

※ 위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5.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 자격 서류심사</li> <li>▪ 결격사유 조회</li> <li>▪ 시험의 시행</li> <li>▪ 시험 합격자의 관리</li> <li>▪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li> <li>▪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각 기관이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li> </ul>

※ 수집 근거: 행정사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 면제자격 심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 (「전자정부법」 제42조)

조회 목적	조회 항목	이용기관
행정사 자격시험의 업무처리(면제 자격 서류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li> <li>▪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li> </ul>	한국산업인력공단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 자격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택일)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동의  미동의

#### 7.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 (「전자정부법」 제42조)

조회 목적	조회 항목	이용기관
행정사 자격 시험의 업무 처리(결격사유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해당 여부</li>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li> </ul>	행정안전부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조회정보	국민연금가입증명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자격득실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피보험자격 <input type="checkbox"/>	확인일자	직원성명	(인)
------	-----------------------------------	-----------------------------------	------------------------------------	------	------	-----

# 【별지 3-1】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증명서(2026)

※ (유의사항) 이 증명은 행정사 시험면제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5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뒤쪽의 유의사항 및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제출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급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휴직사항 (육아휴직 포함)	휴직기간			비고(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근무기간	년 개월		최종 직위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공무원만 해당,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징 계 ( 파 면 , 해 임 , 강 등 , 정 직 이 상 ) [ 행정사법 제9조제3항 징계처분사항 확인 ]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직위해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도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면제)에 따라 행정사 시험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인사부서장 확인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대표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이 증명은 행정사 시험면제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5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 ① 주소 : 주민등록주소를 쓰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 ③ 성명 : 한글로 적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별지 3-2】 (해사행정사)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 업무 종사 관련 경력증명서(2026)

※ (유의사항) 이 증명은 행정사 시험면제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5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뒤쪽의 유의사항 및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제출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급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휴직사항 (육아휴직 포함)	휴직기간			비고(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근무기간	년 개월	최종 직위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공무원만 해당,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징 계 ( 파 면 , 해 임 , 강 등 , 정 직 이 상 ) [ 행정사법 제9조제3항 징계처분사항 확인 ]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직위해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도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면제)에 따라 행정사 시험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인사부서장 확인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대표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6】 [성적확인동의서]

##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

Family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Test site: \_\_\_\_\_

Test date: \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 1 TOEIC Score

Listening: \_\_\_\_\_

Reading: \_\_\_\_\_

Total: \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TOEIC Committee / ICF

Jongno 98,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성적확인동의서\_견본]

##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Japan**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Gil Dong***

Family name: ***Hong***

Date of birth: ***07/25/1980***

Test site: ***Tokyo, Japan***

Test date: ***07 / 27 / 2003***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050000-4***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시험 접수 시 기재했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2279-0509***

### ● TOEIC Score

Listening: ***355***

Reading: ***295***

Total: ***650***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이곳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TOEIC Committee / ICF

Jongno 98,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mailto: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Date of Authorization: ***04 / 05 / 2020*** (작성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